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7. 7 선고 2020가단562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호사 김혜민

변론 종결 2021. 6. 2.

판결 선고 2021. 7. 7.

주 문

1.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14.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1. 청주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1236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2017. 3. 31. 보증금액 9억 9,000만 원, 보증기한 2018. 3. 30.로 정하여 D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때 D의 대표이사인 B가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20. 6. 26.로 변경되었다.

나. D에 2019. 11. 16. 금융리스 연체 발생으로 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0. 9. 2. 주식회사 E에 D의 채무 1,005,052,86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20차전20498호로 D와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3. 2. 'D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7,583,4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B에 대하여 2021. 2. 25. 확정되었다.

라. 한편, B는 2019. 11. 14.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1. 2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04,247,868원 상당이다.

1	중소기업	518,334,000
2	원고	1,005,052,868
3	피고	300,000,000
4	F	79,800,000
5	F	215,533,000
6	G 은행	15,151,000
7	E 카드	18,544,000

1	중소기업	518,334,000
8	H 카드	11,893,000
9	E 카드	16,000,000
10	I 카드	7,950,000
11	J 카드	6,000,000
12	H 카드	12,800,000
13	K 은행	200,000,000
14	L 은행	49,998,000
15	I 카드	47,192,000
	2,504,247,868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이틀 후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원고가 D를 대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인 B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 심화시킨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020. 3. 2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20. 6. 26.로 연기한 사실을 이유로 피보전채권의 성립을 부정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에

대하여 2019. 11. 16.자로 연체가 발생하였고, 이에 D에 대출을 실시한 금융기관들이 2019. 12. 23.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위한 자유회의를 구성하여 D에 대한 채권행사기한을 2020. 3. 31.로 유예하기로 결정한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위 채권행사기한 이전인 2020. 3. 27.이었고, 이에 원고는 보증기한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하면서 위 채권행사기한 이후인 2020. 6. 26.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보증기한 연장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연기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2018. 5. 25. B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차용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시가는 3억 2,800만 원 상당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2017. 8. 14.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277,2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가 피고의 B에 대한 3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에도 부족한 자력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하선화

별지